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

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처분내용	처분의 제목	
	처분대상 자격증	
처분근거	근거 법령	
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
처분담당자	소속 / 성명	
	연락처	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.

년 월 일

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



○ ○ ○ 귀하